

改正不正競爭防止法 解說(上)

不正競爭防止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I. 法改正의 背景

政府는 1986. 12. 31 法律 第3897號로 不正競爭防止法 改正法律을 公布하고, 이어 87. 7. 1 大統領令 第12203號로 不正競爭防止法 施行令을 制定公布함으로써 不正競爭防止法 施行에 따른 法的措置를 完了하였다.

이 法은 1961年 12月 30日 制定公布된 以來 25年동안 한번의 改正도 없이 改正前까지 施行되어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經濟現況은 經濟活動領域의 多樣化, 經濟規模의 擴大, 經濟內容의 複雜化 및 國際化등으로 이法 制定 당시인 1960年代初와는 比較도 할 수 없을 程度로 變貌되어 있어 不正競爭行爲를 效率的으로 規制하는데 改正前의 法으로는 未洽한 實情이었다.

産業革命으로 비롯된 急速한 工業化는 國際交易의 增大를 가져왔고 이 過程에서 品質, 性能 또는 機能面에서 優秀한 製品에 대한 偽造, 模造商品의 製造, 去來가 必然的으로 誘發되었다.

이에 따라 交易當事國은 이러한 不法의이고 商去來倫理에 反하는 行爲를 防止하고 健全한 商去來秩序를 確立하고자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에서 不正競爭防止를 위한 規制問題를 提起하였고, 同盟國은 이에 積極的으로 協助하도록 함으로서 各國은 不正競爭防止法, 商標法 또는 消費者保護法 등으로 不正競爭行爲를 規制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境遇와 같이 經濟發展에 따른 對

外交易의 急伸張은 先進國으로부터 羨望과 警戒와 疾視의 對象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不名譽스럽게도 臺灣, 香港과 같이 世界 3大偽造, 模造商品의 溫床地로 指目되어 國際社會에서 나쁜 印象을 造成하고 있다.

對外依存經濟構造를 갖고 있는 우리의 與件으로 보아 經濟發展過程에서 한때는 어쩔 수 없는 實情이었다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國際社會에서의 地位로 볼때 우리의 自矜心에 損傷을 招來하는 行爲는 마땅히 剔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國際商去來秩序를 紊亂시키고 國際信義를 저버리는 行爲들은 最近 들어 더욱 強化되고 있는 交易相對國들의 保護貿易主義의 口實을 提供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對內外的 商去來行爲에서 發生되는 不正競爭行爲에 대하여 效率的이고 積極的으로 規制를 함으로서 對外的으로는 國際間의 通商摩擦을 줄이고 國際信義를 提高함은 勿論 對內的으로는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本法을 改正하게 된 것이다.

II. 不正競爭防止를 위한

國際的 動向

法改正의 背景에서도 약간 言及한 바와 같이 不正競爭行爲는 商去來秩序를 파괴함으로써 自國內에서의 問題發生은 勿論 對外交易問題에서 더욱 甚刻한 影響을 招來하고 있는 바 不正競爭行爲 追放을 위한 國際的 動向을 살펴보는 것도 不正競爭防止法을 理解하는데 有益하리라 思料



金 惠 來
〈特許廳 法務官〉

目 次

- I. 法改正의 背景
- II. 不正競爭防止를 위한 國際的 動向
- III. 法改正의 主要內容
- IV. 맺 는 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되어 改正法을 說明하기 前에 主要國際機構들의 活動狀況 및 美國의 對應姿勢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民間國際機構를 통한
不正競爭防止活動

가. 國際商工會議所(ICC)

- 1919年 設立(파리所在)
- 會員: 106個國
- 國際 Symposium 등 開催
 - 國際交易增加에 따라 商標盜用 全世界的으로 增加趨勢(年間 約 40~90億弗 推定)
 - 偽造商品의 被害가 經濟的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生命 및 健康에도 미칩
 - 商標盜用은 新興工業國뿐만 아니라 유럽 諸國에서도 發生
 - 侵害에 대한 效率的인 調査 및 提訴節次 마련 등
- 各種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調査와 그 防止策을 講究하고 있다.

나. 模造情報局(CIB)

- 1984.12 國際商工會議所 支援으로 設立(London 所在)
- 特許權·著作權·意匠權과 Model은 勿論, 商標가 附着된 商品의 模造를 防止하기 위한 調査活動
- 主要活動內容
 - 模造者들의 商品活動에 관한 情報蒐集과 이들 情報를 통한 對照調査
 - 會員들에게 蒐集된 情報의 定規的 提供과

特別報告書 發刊

- 模造商品의 根源과 流通에 대한 能動的이고도 徹底한 調査實施
- 調査結果 模造商品의 押收와 起訴를 위해 世界各國의 司法機構에의 移牒 등
- 다. 國際模造防止協會(IACC)

○ 1978年 純粹한 民間機構로 發足(Sanfransisco 所在)

- 美國의 大企業이 中心이 되고 英·佛 등 유럽國家의 企業加入(約 300個企業)
- 模造防止策에 대한 美國政府 各 機構에 報告書 提出(美國務省 ITC 등과 密接한 關係)
- 美國政府의 壓力團體로서의 役割

2. 世界知的的所有權機構(WIPO)

- 偽造行爲防止에 관한 專門家委員會 開催
- 效果의 偽造防止를 위한 各國工業所有權法의 適切한 條項의 具體化 勸告
 - 18個國 商標法의 關聯規定 調査
 - 各國法 改正에 參考될 Model 規定 制定

3. EC 偽造商標防止法(案)
(1988.1.1 發效豫定)

- 背景
 - EC 執行委는 偽造商品 規制問題를 GATT 體制에 포함시킬 것을 主張
 - 開途國은 先進國 및 EC의 이러한 主張을 輸入規制에 濫用될 可能性이 크다는 理由로 反對
 - 開途國의 反對로 인한 時間遲滯로 優先 EC 域內의 全般的 偽造商標規制를 위해 同法案制定

- 同法案 主要內容
- 偽造商品 : EC 會員國 및 EC 商標法(假稱)에 의거 登錄된 商標를 無斷使用한 商品
- 偽造商品의 혐의가 있을時 稅關當局은 同商品의 通關을 中止
- 偽造商品으로 最終 制定時 各會員은 同商品의 沒收가 可能토록 必要한 法的措置 講究

4. GATT

- 偽造商品 交易防止
- 專門家로 Expert Group 構成
- 偽造商品關聯 法的 制度的인 面 研究
- 同問題에 관한 報告書 '86總會에 提出
- New Round에 同問題 檢討

5. New Round의 強力한 推進

- New Round 協商에 서비스·高度技術産業 分野 등을 包含
- Service 交易의 自由化
- Service 産業에 대한 各國의 規制法規 協議
- 高度技術製品에 대한 各國의 市場開放
- 知的所有權 保護
- 知的所有權의 形態, 模造品規制 紛爭調整 메카니즘에 관한 GATT 條項 마련

6. 美 國

美行政府는 知的所有權保護 未洽國家에 대하여 GSP 受惠, 301條등의 手段을 動員하여 壓力을 加하고 있으며 美議도 같은 傾向임.

○ '84 美通商關稅法 一第301條

知的所有權을 포함하는 美國의 産業에 대하여 不當하고 不合理的이며 差別的인 負擔을 주거나 制限하는 各國의 法律·政策·慣行 등에 對應하여 美大統領이 報復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였다.

○ GSP 延長法

受惠開途國 法定時 知的所有權(特許權·商標權·著作權)의 保護程度에 따라 延長 與否 決定

○ 美關稅法 第337條

- 知的所有權 侵害商品 輸入禁止
- 特許權侵害·商標盜用·商品外樣의 模倣,

原產地 虛偽記載등 不公正行爲로 看做

○ 商標偽造團束法

<刑事>

— 初犯

個人 : 25萬弗以下 罰金
5年以下 徵役) 併科可能

法人 : 100萬弗以下 罰金

— 再犯

個人 : 100萬弗以下 罰金
15年以下 徵役) 併科可能

法人 : 500萬弗以下 罰金

— 偽造商品의 押收

<民事>

— 損害額의 3個 認定可能

Ⅲ. 法改正의 主要內容

이번 法改正의 主要內容은 크게 두가지로 區分하여 說明할 수 있다.

첫째는 各條文에 있어서의 內容補完(字句修正 包含), 條文의 統合 또는 分離, 條文配列順序의 變更등 法體系에 대한 一大改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改編은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制定된지 오래된 法으로서 近來의 法制方式, 表現과 不合理的하는 등 거의 全 條文을 改正하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理由로 全 文改正의 形式을 擇하게 된 것이다.

두째는 偽造·模造行爲 등 不正競爭行爲에 대하여 行政官廳이 보다 積極的으로 指導·啓蒙을 할 수 있도록 法的根據를 마련함으로써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效率的 規制가 可能토록 한 것이다.

改正前 不正競爭防止法(以下 舊法이라 한다)에서는 不正競爭行爲에 대하여 司法節次에 따른 刑事處罰을 위한 告發만이 可能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不正競爭行爲에 該當한다 하더라도 그 違反程度가 輕微하거나 處罰보다는 是正措置 등 指導·啓蒙措置가 더 바람직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是正勸告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 行政官廳이 不正競爭行爲에 대하여 告發을 통한 處罰과 指導·啓蒙을 통한 是正措置를 併行할 수 있게 함으로서 行政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違反事項에 대한 是正勸告를 하기 위하여는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意見을 聽取하도록 하는 規定을 明文化하여 行政處分の 慎重化와 客觀化를 期하도록 하였다.

以下 改正法의 主要內容을 詳述하고자 한다.

1. 體系의 改編과 內容의 補完등

가. 不正競爭行爲의 “定義”規定 新設(第2條)

舊法 第2條는 題目을 “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權”이라 하고 第1號에서 第6號까지 不正競爭行爲의 款型을 規定하는 同時 이러한 行爲로 因하여 營業上의 利益이 侵害될 憂慮가 있는 者는 그 行爲의 中止를 請求할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定義에 該當하는 內容과 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權을 함께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改正法에서는 이를 定義規定과 不正競爭行爲中止請求權을 따로 떼어 規定하였다. 이렇게 分離規定한 理由는 現行法體系의 形式을 따르고자 한 것이고 特別한 다른 理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同條의 內容補完으로서는 第1號·第3號 내지 第5號中 “商品을 販賣·無償頒布 또는 輸出”하는 行爲라고 規定하고 있는 바 이中 “無償頒布”라는 用語는 “有償頒布”라는 用語에 對稱되는 概念이고 “有償頒布”는 이 法의 販賣 또는 輸出이라는 意味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 法에서는 有償頒布라는 用語를 쓰지 않고 販賣 또는 輸出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으므로 販賣 또는 輸出이 아닌 경우를 굳이 “無償頒布”라는 用語를 使用할 必要가 없다고 判斷되어 “頒布”라고 表現하였으며 아울러 輸出뿐만 아니라 輸入行爲도 不正競爭行爲로 포함시킴으로서 不正競爭行爲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또한 第4號中 “……製造 또는 加工된 國家以外……”의 國家라는 表現도 現實적으로는 製品에 國家보다는 生産 또는 製造地域(例: California産……등) 表示를 一般적으로 하는 實情이므로 이를 國家를 포함하는 地域이라는 用語로 表現하였으며, 第5號中 “商品의 品質·內容 또는 數量”에 “製造方法·用途”를 追加시킴으로서 不正競爭行爲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以上과 같은 不正競爭行爲의 範圍擴大를 主로 한 內容補完은 모두 指導·啓蒙의 對象을 넓혀 不正競爭行爲規制를 施化하는 效果를 갖어오게 되었다. 끝으로 舊法 第2條 第6號(他人의 營業上의 信用을 侵害하는 虛偽事實의 陳述·流行行爲)는 削除하였는바 이는 本法의 規制對象이라기 보다는 刑法의 適用對象으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나. 國旗·國章등의 使用禁止에 관한 規定 (第3條)

이 規定은 舊法에서는 第6條에서 規定하였으나 改正法은 第3條에서 規定하고 內容도 多少 補完하였다.

舊法은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또는 國際機構등의 標識는 商標로 使用할 수 없도록 하였고(第6條 第1項), 外國의 紋章·記章 其他 徽章과 外國政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 印章 또는 記號로서 商工部長官이 指定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그 國家의 當該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商標 또는 原產地의 誤認을 이르기게 하는 方法으로 使用할 수 없도록 規定(同條 第2項 내지 第4項)하고 있다.

舊法과 같이 모든 國家 및 그 國家의 國旗·國章·勳章·褒章·旗章·紋章·記章 其他 徽章과……등을 保護對象으로 할 경우 現實적으로 그 對象國家 및 國旗·國章 등의 把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外國政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의 印章이나 記號를 保護하기 위하여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境遇도 그 對象國家와 對象印章 등을 指定하는데 客觀的 基準을 定하기 어려움으로 改正法에서는 國旗·國章등의 使用禁止對象을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當事國의 國旗 및 國章과 監督用 또는 證明用 印章·記章 및 國際機構의 標識로 制限하여 規定하였으며, 이러한 國旗 등도 當該國家나 國際機構 또는 當該國政府의 許可를 받으면 使用할 수 있도록 融通性을 賦與하였다.

그리고 舊法에서 國旗·國章·紋章 등 複雜하게 使用된 表現을 國旗·國章 以外の 用語는 모두 徽章이라는 用語로 統一시킴으로서 用語에서 惹起되는 混亂을 除去시켰다. <계속>